민사 사건 위임계약서

위임인

ㅇ ㅇ ㅇ (또는 ㅇ ㅇ ㅇ 외 00 인)

수임인

법무법인 ㅇ ㅇ ㅇ(또는 ㅇ ㅇ ㅇ 법률사무소)

사건위임계약서

위임인(갑): ㅇ ㅇ ㅇ			
수임인(을) : 법무법인 ㅇ ㅇ ㅇ(또는 ㅇ ㅇ ㅇ 법률사무소)			
(주 소) 전화: 00-000-0000 팩스: 00-000-000			
■ 사건의 표시			
사건번호	(관할)	상대방	
사건명1		심급(위임의 한계)2	
■ 특약사항			

¹ 관련 사건을 동시에 수임하는 경우 각각의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거나, '___ 사건 등'으로 표시. 2 민사 사건의 위임은 각 심급별 위임을 기본으로 함(제4조 참고).

제 1 조 【목 적】

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(이하 '위임사무'라 한다)를 위임하고, 을은 이를 수임한다.

제 2 조 【수임인의 의무】

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,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3 조 【수권의 범위】

갑은 을에게 일체의 소송행위, 변제의 수령, 상소의 제기, 재판상 또는 재판외화해, 복대리인의 선임, 소의 취하, 청구의 포기 권한을 수여한다.

제 4 조【위임의 한계】

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, 파기·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, 강제집행, 강제집행정지,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대한 위임여부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,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.

제 5 조【착수금】

- ① 갑은 을에게 이 사건에 대한 착수금으로 금_______원(부가가치세 별도3)을 지급한다. 갑은 위 금원을 본 위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 • 입금계좌: (예금주:)
- 3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거나,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을 표시 하여 계약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- ② 갑은 소의 취하, 상소의 취하, 화해, 당사자의 사망, 해임, 위임계약의 해제, 청구의 포기, 인낙, 소송상화해, 조정, 소송물의 양도, 제 10 조에 의한 계약 해지기타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을이 상기 위임사무에 관하여 연구, 조사, 서면의 작성, 사건관계자 면담, 출정 등을 한 경우, 위임사무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.
- ④ 갑이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본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을은 제 3 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갑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를 제 1 항의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기로 한다.
- ⑤ 을은 갑이 제 1 항의 착수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위임사무에 착수할 의무가 없다.4

제 6 조 【성공보수】

- ① 위임사무가 판결,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(화해권고결정 포함), 조정(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)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,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.
 - · 갑의 경제적 취득이익의 ______% (부가가치세 별도)⁵
- ② 제 1 항의 성공보수는 갑의 청구의 인정된 부분 및 상대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을 포함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, 제 1 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.
 - 가.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, 소의 취하, 상소를 취하한 경우
 - 나.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(변제 및 공탁 포함), 소의 취하, 상소를 취하한 경우(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

⁴ 위임사무의 착수는 착수금 완납 이후를 기점으로 함.

⁵ 착수금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할 것.

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.)

다.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. 제 10 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

제 7 조【비용부담】

갑은 을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. 그 외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감정료, 예납금, 보증금, 기록열람등사비용, 보증공탁금, 출장여비, 번역료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하며 착수보수 또는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한다.6

제 8 조 【승소한 경우 성공보수 및 비용의 처리】

- ① 제 6 조에 따라 갑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, 갑은 을에게 상대방에 대한 판결금 청구권을 양도한다.7
- ② 을이 판결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, 제 6 조에 따른 성공보수 및 제 7 조의 비용을 공제하고 즉시 갑에게 잔액을 지급한다.
- ③ 을이 판결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정기금을 지급받을 경우, 제 6조에 따른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즉시 갑에게 잔액을 지급한다.
- ④ 상대방이 갑에게 판결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, 갑은 그 즉시 을에게 본 위임계약상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(제 6 조의 성공보수 및 제 7 조의 비용 포함)을 지급한다.
- ⑤ 갑이 본 위임계약상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, 을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,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.
- ⑥ 갑은 을에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고 수령권한을 위임한다.8

⁶ 통상 인지대 및 송달료, 감정 비용 등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나, 기재된 구체적 내역의 부담여 부는 의뢰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.

⁷ 편의상 을에게 승소에 따른 확정판결금 청구권을 양도하고, 을이 지급받은 판결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나, 갑이 원치 않을 경우 제1~3항을 제외하고 제4항부터 적용함. 8 원칙적으로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권은 갑에게 있으므로, 성공보수에 준하여 을이 소송비용 청구권을 양도받을 것인지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 선택사항임.

제 9 조 【자료제공 등】

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고, 갑은 을이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답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【계약의 해지】

-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의 고의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, 을은 이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.9
 - 가.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나. 갑이 재판 등에서 임의로 진술하는 경우
 - 다. 갑이 을과의 사전 상의나 협의 없이 위 위임사무에 관하여 상대방(및 상대방 대리인)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
 - 라.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
 - 마. 특별한 이유 없이 갑이 착수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 지체하는 경우
- ② 전항의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【통지의무】

- ①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,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통지는 서면, 구두, 문자송신,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 12 조 【보수지급의 지체】

- ① 갑이 본 위임계약에서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,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.
-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【자료의 보관책임】

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위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.

제 14 조【인장조각】

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,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5 조【비밀유지】

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,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16 조【민법과의 관계】

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 17 조 【중재】

본 위임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.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.

위임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, 계약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.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계약서 기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·이용목적, 보유·이용기간,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등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0000. 00. 00.

위임인 (갑)

성 명: ㅇㅇㅇ(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
주 소:

전 화: E - mail:

수임인 (을)

법무법인 ㅇ ㅇ ㅇ(또는 ㅇ ㅇ ㅇ법률사무소) (인)

변호사 ㅇ ㅇ ㅇ